1. 개정이유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·제19조의2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

2. 주요내용

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fsc0476 /2023-03-21 15:02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금융위원회고시　제 2023-000호

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전자등록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-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-3조(규제의 재검토) 금융위원회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・제19조의2 및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fsc0476 /2023-03-21 15:02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-3조(규제의 재검토) 금융위원회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·제19조의2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fsc0476 /2023-03-21 15:02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